

1. 가축전염병 발생정보(제 2호)

농촌진흥청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1993. 8. 17
농촌진흥청
(0331)292-4296

농촌진흥청은 여름철에 전파되는 닭의 류코사이토증병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닭 류코사이토증병 발생주의보

닭 류코사이토증병은 닭겨모기가 매개하여 전파시키는 기생충성 전염병으로 1959년 처음 발생한 이래 양계규모가 대형화 됨에 따라 1987년부터는 매년 전국에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질병입니다.

최근 발생으로는 1991년에 경북 성주, 칠곡, 월성, 달성군과 경기도 송탄, 평택, 안성군, 충남 성환, 천원군 지역에 발생되었고 1992년에는 경남 의령, 함안, 삼천포 지역에 발생되어 양계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현재 경남 함안, 의령, 산청군 일대에 28,600수, 충남 보령군에 5,700수, 전북 정읍, 고창군에 12,000수가 감염되어 30~60%가 발병되었고 20~30%의 산란 저하와 1~5%의 폐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류코사이토증병의 증식에 가장 적합한 30℃ 이하의 온도가 계속되므로 예년보다 빨리 중부지방까지 발생이 확산되고 있으며, 8월중의 태풍으로 감염모기가 바람을 타고 전국에 번졌을 것이 예상되므로 양계농가에서는 필히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1. 주요증상과 진단

- 비늘과 육수에 심한 빈혈현상을 나타내고 위축이 되며 녹색의 설사를 한다.
- 산란율이 갑자기 20~30% 떨어지며 기형란, 연란을 낳는다.
- 혈액이 묽어지며 식욕저하와 객혈을 동반한다.
- 폐사된 닭을 해부했을 때 복강에 혈액이 모여 있으며 복막염을 나타낸다.

2. 예 방

- 계사 내외부의 닭겨모기 제거를 위하여 정기적으로(10일 간격)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모기 유인등을 설치하여 닭겨모기를 구제한다.
- 설파디메톡신을 10일 간격으로 3일간씩 투여하거나 엑티신(올메토프림과 설파모노메톡신)을 사료에 첨가하여 9월말까지 급여한다.
-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닭겨모기 구제와 예방을 위한 약제를 반드시 투여하여야 한다.

3. 처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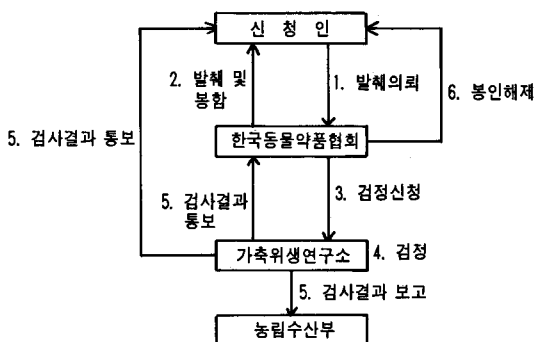
- 발병이 되었을 때는 설파디메톡신을 4~5일 계속 투여하면 쉽게 회복된다. 그러나 회복속도가 느리므로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설파제의 잔류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휴약기간을 두어야 한다.

2.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관리내용 안내

최근 개정된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관리내용 변경사항을 정리 안내합니다.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관리내용

가. 국가검정 절차



1. 발체 의뢰

- ① 발체의뢰는 '국가검정발체의뢰서'를 작성하여 동물약품협회에 신청(FAX 또는 유선)
- ② 검정발체료는 무통장입금(검정 발체료=신청수량×5원)
구좌번호 : 한일은행 (085-080313-01-501 : 한국동물약품협회)
농협중앙회 (367-01-002687 : 동물약품협회)
중소기업은행(221-001596-01-015 : 이오직)
* 검정수수료도 같이 입금
- ③ 발체의뢰서에 국가검정 신청수량, 제조번호 및 제형별 구분을 정확히 기재

2. 발체 및 동합

- ① 발체의뢰서 접수순서에 의거 발체함을 원칙으로하되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별로 구분 발체함.
- ② '국가검정품 및 보관품 발체기준'에 의거 검정품을 균등 분할하여 무작위로 발체

국가검정품 및 보관품 발체 기준
(가축위생연구소 고시 제 1993-2호 개정내용)

제 3조

가.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국가검정시공품 및 보관품을 발체하여 제 2조 다항에 의해 봉인한 후 즉시 검정기관에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의하여 검정기관에서도 발체할 수 있다.

나. 수입제품의 발체요령은 통합공고 제 23조 4항에 의한다.

다. 국가검정시공품 및 보관품의 발체방법은 검정의뢰 수량은 정확히 확인한 다음 발체수량을 균등 분할하여 무작위로 발체한다.

라. 발체가 종료된 후 검정품 보관청고에 검정품은 검정품 전체를 의무와 차단되게 태이므로 잘 포장하거나 시간정차가 된 별도의 밀봉장치를 한 보관소에 별지 3호의 봉인지를 부착하고 개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4호의 봉합인을 다수표시한 후 별지 5호의 서식에 의거 한국동물약품협회에게 보고하고 용명, 제조번호, 검정 신청수량등 검정 신청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즉시 검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체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 또는 검정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수의사로서 국가 검정 발체 품목 이외에도 국가 검정종인 제품의 봉인여부, 제조번호, 제조수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5호의 서식에 의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보고하고 봉인이 완료된 개봉되거나 의심이 인정될 때 즉시 개봉 확인하고 차체없이 검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조

가. 보관품은 국가검정 신청인이 보관하고 보관방법은 제품의 보존방법에 따른다.

나. 필요시 국가검정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품을 검정기관이 국가검정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검정품의 구분보관을 위한 테이프, 발체용기는 업체에서 준비
- ④ 발체요원이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검정신청서'와 '차기시험성적서'를 접수 후 검토(검정신청일은 기재하지 않음)
- ⑤ 관리요원(발체자)은 발체품목 이외에 국가검정 종인 제품의 봉인여부, 제조번호, 제조수량등 점검
- ⑥ 생물학적제제는 봉인해제시 관리대장(입고부, 출고부)를 확인하고, 항생물질제제는 발체시 입고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출고부 확인

3. 검정 신청

- ① 관리요원이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신청서와 자기시험성적서, 발체확인서, 시공품을 첨부하여 가축위생연구소에 검정신청
- ② 생물학적 제제는 역가저하 우려시 신청자가 직접 운반 가능

4. 검정

- ① 국가검정동물약품검정기준에 의함

5. 검정결과 통보

- ① 가축위생연구소는, 신청인,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서면 통보 및 보고

6. 봉인 해제

- ① 항생물질제제는 신청인이 봉인해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리요원 임회
- ② 생물학적제제는 관리요원이 관리대장 및 봉인여부등을 확인하고 봉인해제

7. 제품 출고

- ① 국가검정 불합격품은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규칙 제 9조 및 제 10조에 의하여 조치
- ② 합격품은 봉인해제 후 출고

나. 상표관리

1. 항생물질제제

- ① 상표의 직측 상단에 다른문자와 명확히 구별 되도록 국가검정필 표시
- 2. 생물학적 제제(세부사항은 별도 협의 후 조치)

- ① 품질관리 우수업체(KGMP)에서 생산한 검정면제 약품을 포함하여 동판 및 상표를 협회에서 관리

다. 기 타

* 국가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매년 1회이상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조사 및 시공품을 발체하여 시험 실시

* 수입 국가 검정품

- 현행의 통합공고 제 23조 4항 규정에 의하여 통관 전에 국가검정을 필해야 하며 국문 표시사항의 직측 상단에 다른문자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국가검정필 표시(생물학적제제 포함)